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 의 명 : 제1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1. 5. 12.(수) 10:00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원장

김현 부위원장

김효재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안형환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

## 제1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 10시 00분 개회 】

### 1. 성원보고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국기에 대한 경례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1년도 제1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전자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지난 제16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겠습니다.

####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 한상혁 위원장

- 제17차 서면회의 결과 <의결안건> 2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보고안건> 4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6. 보고사항

### 가.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 한상혁 위원장

- 먼저 <보고안건 가>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윤웅현 재난방송관리팀장

-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입니다. 라디오 방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재난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보고드리기 위함입니다. 경과사항입니다. 지난해 10월 14일 제55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난방송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또한 10월 16일 한국방송 협회는 “라디오 재난방송 기준 합리화 요청서”를 국무조정실과 방통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국방송협회에서 제출한 내용 중 주요내용은 재난방송 실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내용과 지역호명방식 개선 등 효과적인 전달방식으로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라디오 재난방송 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반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라디오방송의 재난지역 호명방식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개정 내용은 재난방송 요청 시 라디오 방송사업자는 재난 발생시간, 명칭 및 발생 지역 등을 요청받은 그대로 빠짐없이 방송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재난 발생지역의 경우 “폭염”, “한파” 및 “건조”에 한해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호명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 사유입니다. “폭염”, “한파” 및 “건조”는 “태풍”, “호우” 등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긴급재난과는 달리 광범위한 지역에서 완만한 속도로 발생하므로

재난 발생지역을 시·군·구로 구분하여 호명하기보다는 광역시·도 기준으로도 방송할 수 있도록 혼용함으로써 라디오 이용자의 청취권을 보호하고 매체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방통위 의결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이번 안건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업계의 건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재난방송 관련 법령 위반 과태료 처분을 의결하는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주셨던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인 것 같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 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잘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현 부위원장

- 방송협회에서 제도개선 요청이 있었고, 그 요청의 일환으로 지역호명방식으로 개선해서 지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안으로 봅니다. 잘 개선되었다고 보고, 이후에도 국민들에게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방송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는 노력을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안 동의 의견이시지요?

○ 김현 부위원장

- 예.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만 작년에도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라디오라는 매체의 특성과 해당 재난의 성격에 따라 재난방송 실시의무를 융통성 있게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사무처에서 연구반을 운영하면서 또 방송사 측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보다 합리적인 안을 잘 만들어온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안형환 상임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사무처에서는 이번 사례처럼 외부의 합리적 의견 등에 대해서는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도 그렇게 함께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 한상혁 위원장

- 재난방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하고, 향후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재난방송이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는 의견이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 나. 대화형 앱 사업자의 위치정보 실태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 ○ 한상혁 위원장

- 다음은 <보고안건 나> “대화형 앱 사업자의 위치정보 실태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소라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직무대리

-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 보고 사유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화형 앱 사업자의 위치정보보호 법규 준수여부 실태점검 결과에 대해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2> 점검 개요입니다. 점검 배경은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한 기능이 있는 대화형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없이 운영한다는 국회 지적 등에 따라 위치정보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기간은 금년 2월부터 3월까지였고, 대상은 대화형 앱 서비스 277개, 사업자 기준으로는 189개입니다. 점검 방법입니다. 주요 앱 마켓에서 277개의 앱 서비스를 다운로드하여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접근권한 설정여부 등을 확인하였고, 3페이지입니다. 해당 앱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위치정보 접근권한을 이용하여 앱 서비스에 활용하면서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4> 점검 결과입니다. 위치정보 접근권한 활용 여부와 관련하여 총 277개의 대화형 앱 서비스 중 157개(111개 사업자)의 앱에서 위치정보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여부와 관련하여 위치정보 접근권한을 이용하는 총 111개 사업자 중에서 90개 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없이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대화형 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위법성 판단입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90개 사업자의 경우, 위치정보법 제9조제1항, 또는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에 위치정보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별칙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5> 조치방안 및 향후계획입니다.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90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하고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점검결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재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111개 사업자 중 90개가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 이소라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직무대리

- 예, 그렇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80%가 넘는 위반율인데 이것은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주로 이 위치정보라는 것이 내 스마트폰기기를 위성에 연동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사업 아닙니까?

○ 이소라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직무대리

- 예, 그렇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주로 이용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 이소라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직무대리

-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앱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이용하실 것 같은데 교통, 지도, 내비게이션 앱들에 주로 사용됩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이것이 내비게이션에 사용되는 것입니까?

○ 이소라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직무대리

- 일반적으로 위치정보가 사용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형 앱이라고 하면 나와 가까운 곳에 있는 친구를 찾아준다거나 추천해 준다거나….

○ 김효재 상임위원

- 이것이 결국 상당 부분이 청소년들의 성매매에 악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영업행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80% 넘는 위반율을 보인다는 것은, 이 위치정보 앱들에 대한 단속 또는 점검의 주체가 방통위입니까?

○ 이소라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직무대리

- 다양한 관계부처들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방통위 같은 경우에는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와 관련된 부분들을 점검하게 되고, 또 다른 부처에서 정보통신망법상 유해정보 점검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여성가족부에서 실명인증이나 각종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대해 점검을 해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이것을 여가부에서도 작년에 점검한 적이 있지요?

○ 이소라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직무대리

- 예, 그렇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정부가 힘을 합쳐서 이런 청소년 유해 가능성 있는 것은 사전에 차단해야 하는데 지금 이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가 두 달 동안 조사해 보니까 거의 10개 중 8개가 어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악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 이소라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직무대리

- 예,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수고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감시하고 그리고 법령위반 또는 악용될 우려가 없는지 관계부처와 더 협조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점검해 보니까 '어겼더라'하고 경찰에 고발하고 그냥 손 털고 끝낼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위치정보사업이 그것 말고는 특별히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 이소라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직무대리

- 앞으로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저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대화형 앱 사업자 위법행위에 대해 우리 외에 어떤 정부 부처에서 더 조치를 취하고 있나 봤더니 여가부와 경찰청, 또 방심위 네 군데에서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한 조치사항을 취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이 나온 것처럼 사전차단 내지 사전예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치를 취하는 주무부처가 네 군데나 흩어져 이런 예방이 잘 안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은 방통위가 타부처와 좀 더 긴밀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서 80% 이상 이렇게 많은 사업자들이 이런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서 사전차단, 사전예방에 좀 더 힘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생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앱이 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조사기관이 상당기간 걸려서 방침을 정한 것이지 않습니까?

○ 이소라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직무대리

- 예, 맞습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이 업체들은 운영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아니면 특단의 조치가 있고 그것이 결정될 때까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지요?

○ 이소라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직무대리

- 저희가 위치정보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을 하는 부분들은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이 위치정보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경찰 쪽에서 형사처벌이나 별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그러면 6개월 동안 방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 이소라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직무대리

- 예.

○ 김 현 부위원장

- 우리가 조사하고 결정이 나는 과정에서 이런 유해한 위치정보를 악용하는 소지들이 계속 남발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 이소라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직무대리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즉각적으로 영업을 정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은 없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런 부분을 안내하고 적절하게 계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사무처에서 관계법령을 준수해서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런 유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결정 날 때까지 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서 관계부처와 뭔가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을 협의해 주십시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80%가 악용하고 있고, 또 국민들에게 유해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소라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직무대리

- 이번에 위치정보법상 신고의무를 통보하면서 위치정보법에 있는 각종 위치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의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바로 안내하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다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느라 사무처 직원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향후 사무처에서는 수사의뢰와 함께 수사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계속 모니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1개 사업자 가운데에서 90개로 80% 넘게 적발되었다는 것은 물론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또 몰라서 신고를 하지 않았을 기관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앞으로 신고의무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사전에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한 위치정보 활용 환경 조성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모두 원안 동의 의견이셨습니다. 저희가 실태점검을 한 것은 접근권한을 사용해서 신고대상 인데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법이 정한 처분을 하는 것이고, 그 사업자가 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냐,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여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내용에 대한 심의가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앱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은 영업자유의 측면이 있는 것이고, 저희는 법의 신고대상으로 일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이번 실태점검은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상 유해매체인 경우에는 별도로 점검을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협력을 더 높여서 그런 유해매체들이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의견이셨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을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다.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보고안건 다>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최윤정 방송광고정책과장

-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분리편성광고를 중간광고와 통합하여 시간·횟수를 적용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세부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인식되는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들이 연속하여 편성되어 해당 프로그램들 사이의 광고가 중간광고와 통합기준이 적용되는 “연속편성” 판단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경과사항입니다. 3월 위원회 의결 이후 '21년 4월 중에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방송사업자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고, 국조실 규제심사 사전검토를 마쳤으며, 「방송법 시행령」은 2021년 4월 30일 개정령안이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분리편성 광고가 이루어지는 방송프로그램의 연속편성 판단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연속편성 판단 시 제목·구성의 유사·동일성, 프로그램 간 연결관련 고지, 연속된 프로그램 간 구성상 차이 등 아래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방송프로그램의 제목과 구성의 유사·동일성 및 내용의 흐름, 프로그램 종료 시 다음 프로그램으로 연결된다는 언급이나 고지 여부, 제작 정보나 협찬고지 등 프로그램 종료 시 통상 고지되는 사항의 생략 여부, 연속된 각 프로그램 간의 시작·종료 부분 등 구성상의 차이 여부, 프로그램 기획의도, 계약서상 제작 편수, 타매체·타채널에서 방영 상황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속편성 적용 예외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간광고 규제 우회 목적 없이 재방송, 특별편성 등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제작환경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연속하여 편성해야 할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 중간광고와 통합기준이 적용되는 ‘연속편성’으로 보지 않는 내용입니다. 연속편성하지 않고 기 방송한 프로그램을 연속하여 재방송하는 경우, 또 한 편이 80분 이상인 영화를 2개 이상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는 경우, 총 편성시간의 합이 100분 이상인 생방송 프로그램으로서 제작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방송프로그램 사이에 간격이 필요한 경우, 재난방송, 선거 개표방송, 시상식, 올림픽 등 특별편성 하는 경우, 연속물을 결방 등의 예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연속하여 편성하는 경우, 보도전문편성 방송사업자가 보도 프로그램을 연속하여 편성하는 경우에는 동 고시가 적용되는 연속편성의 적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2021년 5월~6월 중 행정예고를 거쳐 6월 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2021년 7월 1일 개정 「방송법 시행령」에 맞춰서 동 고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재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 ○ 김효재 상임위원

- 지금 분리편성광고를 중간광고로 볼 것이냐, 보지 않을 것이냐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지요?

## ○ 최윤정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맞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이렇게 하면 대개 광고시간이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 최윤정 방송광고정책과장

- 광고시간을 일률적으로 저희가 얼마큼 늘어난다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현재 분리편성광고 같은 경우 사업자에 따라 1분~3분까지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2분 정도하고 있고, 중간광고를 했을 경우 프로그램 길이에 따라 중간광고가 1회나 2회 많게는 3회 이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우리가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과정에 있고 그 세부 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중간광고를 허용할 경우 가장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시청자들의 시청권 침해 문제이지 않습니까? 가급적 광고 시간이 더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것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꽤 많이 늘어나는 것 같다는 연구보고들이 있습니다. 보셨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신문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우리 산하기관인 KOBACO에서 연구해 보지 않았습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예.

○ 김효재 상임위원

- 그 연구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먼저 첫 번째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광고 도입 과정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중간광고 도입에 대한 방송법 시행령은 이미 국무회의를 거쳐 통과되었고, 그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광고시청시간이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몰입도가 높은 중간에 이것을 나누어서 광고를 하기 때문에 광고를 회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과거에 임의적으로 1부와 2부를 잘라서 부자연스럽게 광고를 내보냈고, 또 그런 광고가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1분을 넘어서 2분, 3분 이렇게 된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본다면 이것을 광고시청시간이 많아졌다, 적어졌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종합적으로 본다면 시청권 보호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이나 또는 시민단체나 외부의 의견대로 광고도입 이후 국민들의 시청권 침해가 있을 것인지 여부는 실질적인 타당성을 조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공개된 대로 시청자 영향평가, 또는 사후규제체계 정립을 통해 보다 더 시청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시행되면 시청자들의 시청권 침해 문제가 더 이상 이슈화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배증섭 방송기반국장

- 사무처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분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현 부위원장

- 중간광고가 도입되면 광고량과 시청자 광고시청시간이 증가해서 시청권 침해를 우려한다는 위원님의 우려사항에 대해 사무처에서 역할을 강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편법적인 중간 광고를 방지하고 시청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중간광고로 인한 방송사의 재원 확대가 방송 경쟁력 강화와 콘텐츠 품질 제고로 연결될 수 있도록 방송사에게 관련 규정을 적극 안내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주기를 바랍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분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왜곡된 방송광고시장에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도입해서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원칙이 있었고, 또 분리편성광고 같은 이런 편법적 광고를 제도 틀 안에서 규제할 수 있게 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고시안에는 기존 분리 편성광고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세부 판단 기준과 또 예외 적용 기준이 잘 정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광고량 증가에 따른 시청권 훼손 우려가 있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방송사가 규제를 회피해서 시청자에게 불편을 줄 여지가 생기지 않도록 사무처에서 보다 철저한 고시안 마련에 신경 써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효재 위원님도 원안 동의 의견이시지요?

## ○ 김효재 상임위원

- 예.

## ○ 한상혁 위원장

- 이 안건은 종래에 부자연스럽게 법·제도 밖에서 운영되던 분리편성광고를 중간광고와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시청자의 시청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구체적인 고시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KOBACO가 중간광고를 도입하면 광고시간총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연구인지는 불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KOBACO도 기본적으로 광고판매를 하는 회사로서 그런 입장을 반영한 분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항간에는 경우에 따라 오히려 광고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 전후 광고가 줄어듦으로 인해 광고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주변의 분석이나 연구결과들을 면밀히 살펴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되 시청자의 시청권이 더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후 대책들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 라.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 한상혁 위원장

- 마지막으로 <보고안건 라>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는 편성규제 관련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고시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편성 자율성 확대 및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방송에 대한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2> 경과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3>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가> 1개 국가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수입물 편성규제 완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정 사유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하위 고시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은 1개국 수입물 편성비율 상한을 ‘80% 이하’에서 ‘90% 이하’로 완화하고,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반기’에서 ‘연간’으로 변경하며, 산정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예외조항을 ‘매반기 각 2편 또는 각 120분 이내로 편성한 경우’에서 ‘연간 각 4편 또는 각 240분 이내로 편성한 경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나> 편성비율 산정기간 간소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정 사유는 마찬가지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하위 고시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은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제작물 편성비율 산정 기간을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변경하고, 국내제작 프로그램 및 1개국 수입물의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반기’에서 ‘연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 지역방송에 대한 순수외주제작 의무 편성비율 완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역민방의 순수외주제작 의무비율은 3.2%이나 지역MBC는 MBC 본사, SBS와 동일한 30%를 적용받아 지역방송 간 규제 형평성이 저하되며, 지역MBC는 본사 수중계 등으로 순수외주제작 의무비율을 충족함에 따라 지역밀착 프로그램 등 지역성 구현을 위한 자체제작이 제약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MBC의 순수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을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라> 기타 조문 정비사항입니다. 인용조문 현행화, 조문 체계 정비 등 필요한 사항으로 국내제작 신규 애니메이션 의무 편성 비율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인용조문을 현행화하는 것 등입니다. <4> 향후 일정입니다. 이번 안건을 접수해 주시면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월경 위원회 의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재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지역MBC 쪽의 요청사항으로 완화해 준 것이지요?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30% 때문에 수도권에서 수차례 방송된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재방송하는 그런 폐단들이 있으니까 지역밀착 프로그램을 만들기가 힘들다, 이런 민원이 있었던 것이지요?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20%로 완화해 주면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봅니까?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저렴한 재방프로그램 구매비용이 현재 30%를 맞추기 위해 지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절감해서 지역소재의 외주제작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현 부위원장

- 지역MBC에 대한 순수외주제작 의무 편성비율을 완화하는 것에 동의하고, 앞으로도 중소 지역 방송의 규제로 인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이번 고시 개정 역시 앞의 안건과 마찬가지로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사업자의 편성 자율성을 확대하고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현실에 맞지 않는 편성 관련 낡은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오늘 보고된 편성고시 개정안은 지난 1월 13일 본 위원회가 발표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를 완화하여 미디어 환경 변화 및 글로벌 경쟁 격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송사업자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특히 지역MBC에 대한 순수외주제작 편성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은 경영악화로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여러 지역방송에 대한 규제완화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편성고시 개정이 편성자율성을 확대하고 자유로운 창작 환경을 조성해서 방송콘텐츠 경쟁력 제고에 기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모두 동의하셨습니다. 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 완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원안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 7. 기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별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8. 폐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1년 제1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34분 폐회 】